

보도시점 2026. 8. 20.(목) 13:30 배포 2026. 8. 20.(목)
< 8. 21.(금) 조간 >

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.89%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
- 대만산 38.89%, 중국산 3.66~22.21% 잠정관세 부과 재정부 건의 -
- 中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개최 -

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이재형)는 8월 20일(목),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, 총 2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, 공정 수소이온농도(pH) 조절, 섬유·펄프·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. 올해 3월 (주)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,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대만 포모사, 총 4개사이다.

무역위원회는 본 건 예비조사 결과,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긍정 판정하고,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.66~22.21%,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.89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.

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, 수입자,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였으며,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	책임자	과 장	류 동 희	(044-203-5850)
		담당자	사무관	박 만 희	(044-203-5851)
	산업피해조사과	책임자	과 장	이 길 준	(044-203-5860)
		담당자	주무관	송 하 정	(044-203-5868)
			주무관	신 여 름	(044-203-5863)
	덤핑조사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 영 윤	(044-203-3860)
		담당자	사무관	이 선 덕	(044-203-3865)
			주무관	김 한 결	(044-203-5845)



참고1 [예비판정] 중국 및 대만산 고체수산화나트륨 덤프조사 (원심)

□ 조사 개요

- (신청인) 주식회사 영진
- (조사대상공급자) 중국 동루이 및 관계사, 스카이 임팩스, 유니라이온, 대만 포모사
- (조사대상물품) 고체 수산화나트륨

- (범위)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·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,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
- (용도) 비누·세제 제조, 공정 pH 조절, 수처리, 섬유·펄프·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
- (관세품목분류) 2815.11.0000
 - 관세율 : 기본세율 8.0%, WTO 협정세율 5.5%(대만), 한-중 FTA 협정세율 0%(중국)

□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내용

공급국 / 관세영역	공급자 (수출자, 생산자)	잠정덤핑방지 관세율(%)
중 국	동루이(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3.66
	스카이 임팩스 (Skyey Impex Limited)	22.21
	유니라이온 (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., Ltd.)	19.93
	그 밖의 공급자	17.58
대 만	포모사 (Formosa Plastics Corporation)	38.89
	그 밖의 공급자	38.89

□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

- 조사신청('26.3.17.) → 조사개시(4.7.) → 예비판정(8.20.) → 본조사 진행

참고2 [공청회]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국내산업 피해조사 (2차종료재심)

□ 재심사 요청 개요

- (요청인) 제일씨앤피
- (재심사요청물품)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

- (범위)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·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
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(Photopolymer Violet Plate), 재생판, 더블레이어판(Double-layer Plate)은 제외
- (용도) 인쇄판(알루미늄 판재)에 빛을 노출시킨 후, 출력장비를 통해 인쇄하는 데 사용
- (관세분류) 3701.30.2000
- 관세율 : 기본세율 0%, WTO 협정세율 0%, 한-중 FTA 협정세율 0%

□ 1차 재심 덤핑방지관세 부과('21.5.3~'26.5.2) 수준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덤핑방지관세율(%)
중국	코닥그래픽[Kodak (China) Graphic Communications Co., Ltd.]과 그 관계회사	10.32
	보시카(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와 그 관계회사	
	화광그래픽(Lucky Huaguang Graphics Co., Ltd.)과 그 관계회사	
	화광바오리(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., Ltd.)와 그 관계회사	
	종인(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과 그 관계회사	
	그 밖의 공급자	8.78

*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은 계속됨(관세법 제56조제3항)

□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

- 재심사 접수('25.10.31.) → 재심사 개시('26.1.8.) → 공청회(8.20.) → 최종판정(10월 예정)